

Issue Brief

JEJU WOMAN & FAMILY RESEARCH INSTITUTE

[No.30]

발행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발행일: 2018. 11. 1 | 발행인: 이은희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법령 성평등 개선 동향

이 해 응¹⁾

목 차

1. 제주특별자치도 법령 성평등 개선 추진 개요
 - 가. 성평등 개선 의미
 - 나. 법령 성평등 개선 추진 체계
2.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법령 성평등 개선 동향
 - 가. 분석개요
 - 나.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법령 현황
 - 다. 2018년 법령 성평등 개선안 동향
 - 라. 2018년 성평등 주요 조례 동향
3. 제주특별자치도 법령 성평등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인지정책센터 연구위원



1. 제주특별자치도 법령 성평등 개선 추진 개요

가. 성평등 개선 의미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성평등 개선'은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평등 개선안을 마련하여 법령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하고 실현하는 것을 의미함. 「성별영향평가법」(2011.9.15. 제정, 2012.3.16. 시행) 제정·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령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성평등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음
- 본 연구는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법령 성평등 모니터링 TF팀 회의²⁾ 결과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 10월까지 입법예고된 99개 법령의 유형, 성평등 개선안 내용 및 성평등 주요 조례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정 법령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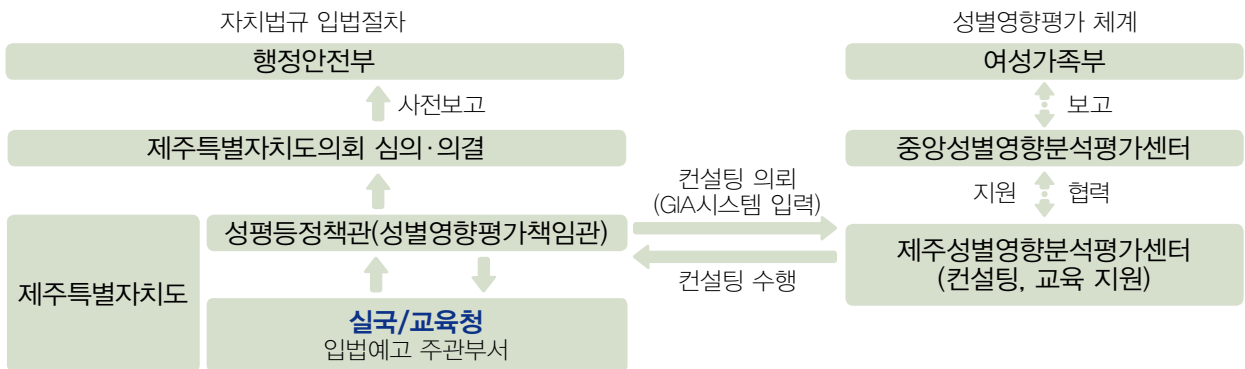
나. 법령 성평등 개선 추진 체계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법령)의 입법절차는 입법계획→입법예고→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지방의회 심의·의결→공포 등 크게 네 절차로 이루어지며, 보통 입법예고 전 관련부서 협의과정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6조의3」에 규정되어 있음³⁾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6조(입법 관련 사항 협의 등)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평가·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이나 해당 법령·자치법규가 정하는 시기까지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1. 6., 2015. 3. 11. > [제목개정 2012. 11. 6.]

- 해당 주관부서에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성별영향평가책임관(도 총괄담당자)에 제출하면 책임관은 '원안동의',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으로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의견'인 경우 해당 주관부서는 반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책임관은 개선의견 수용 여부 확인 등 관리를 함
- 이 모든 과정은 GIA(성별영향평가시스템)를 통해 진행되는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결과를 통보하기 위해 해당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법령 성평등 개선안 반영률은 2015년 7건(3.3%), 2016년 38건(20.9%), 2017년 26건(21.1%)으로 최근 3년 동안 17.8%p 향상되었음, 이는 성인지교육 및 컨설팅에 따른 공무원의 성평등 개선 효과 향상으로 추정됨

〈그림 1-1〉 제주특별자치도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2) 그동안 도정의 입법예고된 법령(조례·규칙) 제·개정 건에 대해 1인 컨설팅 방식과 도의회 발의 법령이 성별영향평가 제도 시스템 내에 들어 오지 못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내부 연구위원 4명, 외부 전문가 3명으로 성평등모니터링TF팀을 구성하여 매월 1회 입법예고된 법령에 대해 성평등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진행함

3) 상위법 및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조례 제5조」임

2. 제주특별자치도 법령 성평등 개선 동향

가. 분석개요

〈표2-1〉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법령 성평등 개선 동향 분석 내용 및 방법

구분	주요 내용
분석 대상	· 2018년 1월~10월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된 99개 법령
분석 내용	· 법령 유형별 분석 · 법령 성평등 개선안 동향 분석 · 성평등 주요 조례 동향 분석
분석 방법	· 2018년 법령 성평등모니터링 TF팀 1~10월, 10회 회의결과자료 분석 · 자치법규시스템에서 관련 조례 검색 및 검토 · 분석지표 : 성별균형참여, 성별특성, 성별통계, 위원 자격기준 완화 및 구체화
분석 기간	· 2018년 10월 (1개월)

나.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법령 현황

-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입법예고된 총 99개의 법령 중 법령개정이 70개(70.7%), 제정이 28개(28.3%), 폐지가 1개(1.0%)로 일부개정 법령이 대부분임. 총 99개 법령 중 조례안이 73개(73.7%), 규칙이 26개(26.3%)로 조례 안이 대부분임. 99개 법령 중 도의회 및 교육청에서 발의한 5개 법령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

〈표2-2〉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된 법령 현황

(단위 : 개, %)

구분		법령 수	비율
전체		99	100.0
제, 개정	제정	28	28.3
	개정	70	70.7
	폐지	1	1.0
조례, 규칙	조례	73	73.7
	규칙	26	26.3
발제자	제주특별자치도	94	94.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	3.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	2.0

-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된 총 99개 법령에 대한 컨설팅 결과, 원안동의가 53개, 자체개선안 12개, 개선의견 26개, 제외 9개, 기타 1개, 폐지 1개로, 성평등 개선안이 있는 법령은 자체개선안과 개선의견이 동시 포함된 3개를 감하면 35개로 전체 법령의 35.4%를 차지함. 아래 표는 자체개선안과 개선의견이 동시 포함된 법령 3개를 중복 계산하여 총 수는 102개로 집계하여 표시함



〈표2-3〉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된 법령 성평등 개선안 현황

(단위 : 개, %)

구분	법령 수	비율
전체	102	100.0
원안동의	53	53.5
자체개선안	12	12.1
개선의견	26	26.3
제외	9	9.1
폐지	1	1.0
기타	1	1.0

* 자체개선안과 개선의견이 동시 포함된 법령 3개를 중복 계산하여 총 수는 102개로 집계됨

- 원안동의는 법령 제·개정 내용에 특별히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성평등 개선안이 없는 경우, 자체개선안은 성평등 개선안을 자체로 마련한 경우, 개선의견은 컨설팅을 통해 성평등 개선안을 제안한 경우를 말함

다. 2018년 법령 성평등 개선안 동향

- 자체개선 법령 11개 중 10개가 성별균형참여를 고려한 성평등 개선안으로 90.9% 차지하고, 한 개만 보육, 연령, 성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성평등 개선안인 것으로 나타남. 성별균형참여 성평등 개선안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기타 성평등 개선안(성별특성, 성별통계, 위원 자격 완화 및 구체적 제시 등) 마련이 필요함

〈표2-4〉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법령 성평등 개선안 내용(자체개선안)

(단위 : 개, %)

구분	법령 수	비율
전체	12	100.0
성별균형 참여	11	91.7
성별특성 고려	1	8.3

〈표2-5〉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법령 성평등 개선안(자체개선안) 예시

법령명	자체개선안	방향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제7조(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③ (생략) ④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분청 각 기금운용관련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촉직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u>특정 성(性)이 60퍼센트가 초과되지 않도록</u>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별 균형 참여 고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8. 빈 점포·상가의 신탁, <u>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도시재생사업</u> 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①~③항 생략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이 때 <u>주민의 성별·연령·계층·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도록</u> 한다.	공동육아 및 돌봄 영역 특성 고려 성별, 연령, 계층, 지역적 특성 반영

- 개선의견 법령 26개에 대해 총 37개의 개선의견을 제안했고, 그중 **성별균형참여** 개선의견이 11개(29.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성별특성** 7개, **성별통계** 4개, **위원 자격 완화 및 구체화** 6개, 기타 9개로 개선의견 내용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표2-6〉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법령 성평등 개선안 내용(개선의견)

(단위 : 개, %)

구분	개선의견 수	비율
전체	37	100.0
성별균형 참여	11	29.8
연령, 장애, 성별 등 특성 고려	7	18.9
성별분리 통계	4	10.8
위원 자격 완화 및 구체화	6	16.2
기타	9	24.3

* 법령 수는 26개이지만 한 법령 당 2개 이상 개선의견이 있어 총 37개 개선의견으로 집계됨

〈표2-7〉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법령 성평등 개선안(개선의견) 예시

법령명	개선의견안	방향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제5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 7. (신설) <u>장애인·고령자, 성별 등의 정보 접근성 보장</u>	성별, 연령별 특성 고려
	제6조(정보관리) ① (생략) ② <u>도지사는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열람가능하도록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u>	장애인, 고령자 특성 고려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 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10호서식] 인증서 재교부 신청서의 대표자 <u>성별란 마련</u> [제14호서식] 제주화장품 사후관리 조사표 대표자 <u>성별란 마련</u> [제15호서식] 제주화장품 생산 확인서 대표자 <u>성별란 마련</u>	성별통계 생산
	제11조(서류의 제출) (생략) 1호~2호 (생략) 3. 제주화장품 1차 피부자극 시험자료(화장품 임상평가기관의 시험대상분 <u>성별 연령별 시험자료</u>)	성별, 연령별 특성 고려
제주특별자치도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위원의 구성)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u>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u> 2. <u>행정·교육·언론 및 유관 기관·단체의 관계자</u> 3. <u>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의 관계자</u>	- 위원 자격기준 완화 및 구체적 제시

라. 2018년 성평등 주요 조례 동향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개정에 도민 참여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는 2014년에 제정이 되었고, 최근 2017년 12월 29일에 일부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성별영향분석결과에 따른 예산편성', '정책 반영 결과를 매년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 '관련 정보 도민에게 공개', '도민 참여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 예산 반영 근거 마련과 정보 접근성을 강화함



- 특히 도민 참여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기에 성별영향평가 과정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 모니터링, 정책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 파트너로서 도민의 역량강화, 정책개선 과정 참여를 독려할 필요 있음

〈표2-8〉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 개정[2014.8.20. 제정 및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주요 개정 내용	방향
제8조의2(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⑥ 도지사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대상 정책 중 분석결과의 반영에 재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 12. 29.]	분석결과에 따른 예산 편성 근거 마련
제9조(분석평가서 등의 제출)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분석평가서 및 정책 반영 결과를 매년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2. 29.]	정책 반영 결과 제출 시기 구체화
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원) 도지사는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내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제16조(전문 인력 양성 및 정보공개 등) ② 도지사는 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별통계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정보 공개화를 통한 도민 접근성 제고 근거 마련
제17조(도민의 참여 조성 및 지원)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9.]	도민 참여 지원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 조례」개정에 양성평등위원회 내실화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는 2007년에 제정이 되었고, 최근 2018년 4월 4일에 일부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양성평등 위원회 정기회의 정례화 및 임시회의 활성화’, ‘각 부서의 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지정’, ‘기획조정실실장이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담당’, ‘추진실적 결과를 기관의 성과평가에 반영’, ‘우수 개인이나 단체 포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체계 내실화 및 성과 동기 부여를 강화함
- 특히 양성평등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연 4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 2018년 9월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성평등정책관이 신설되면서 위원회 기능 내실화 외에도 ‘각 부서의 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지정’하는 등 추진체계의 내실화 또한 기대됨

〈표2-9〉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 개정[2007.1.10. 제정 및 시행, 2018.4.4. 일부개정]

주요 개정 내용	방향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8. 4. 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8. 4. 4.>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 명시

주요 개정 내용	방향
<p>제8조(양성평등담당관의 운영 등)</p> <p>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성인지 정책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하고, 담당을 “양성평등담당”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4. 4.></p> <p>② 양성평등담당관 및 양성평등담당의 운영은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인 기획조정실장이 한다. <신설 2018. 4. 4.></p> <p>③ 양성평등담당관과 양성평등담당은 성인지 정책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8. 4. 4.></p>	양성평등 추진체계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 명시
<p>제1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4.></p>	양성평등정책 추진 동기 및 정당성 부여하는 근거 마련
<p>제19조(포상) 도지사는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8. 4. 4.></p>	양성평등문화 지역사회 확산을 위한 포상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 2018년 1월, 8월에 입법예고됨. 조례안의 내용이 위원회에 관한 내용 중심으로만 구성되고,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성평등 개선안을 제안함
-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전반 내용 보완 필요’, ‘제6조의 3. 법 제17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한 사람’과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한 사람’ 등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구체성을 확보하도록 함.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역 내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제안함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현재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며, 전체 조례안 내용 수정보완으로 재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됨

〈표2-1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2018년 1월,8월 입법예고]

성평등 개선안 제안	사유
조례안 전체 내용이 위원회 구성 내용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성평등 목표 수립,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추진실적 등 관련 조항 등이 전반적으로 보완 필요함	실질적 정책 효과를 위한 기본 조항들 마련 필요
<p>제6조(위원회의 구성)</p> <p>3.(신설) 법 제17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한 사람</p> <p>4.(신설)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한 사람</p>	<p>위원 자격 기준 구체적으로 명시</p> <p>*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에 대한 위촉직 또는 당연직 명시 필요(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으로 임기시마다 위원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위촉직보다 당연직으로 신설 필요)</p>
<p>(제12조를 제13조로 이동)(생략)</p> <p>제12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원) 도교육감은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내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p>	지역 내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3. 제주특별자치도 법령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법령 성별영향평가 제도 개선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의 입법예고된 법령인 경우 모두 성별영향평가(평가 제외대상 제외)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이 발의한 법령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적 규정이 없어 성별영향평가 제도 시스템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 근거 및 체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그러다보니 제주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정은 도의회 발의로 성별영향평가 과정이 삭제되었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법령 성평등 모니터링팀에서 자체 발견하여 모니터링과 성평등 개선안을 제안함
- 양성평등기본법(제15조)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에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우선 도의회 사무처리 규정에 성별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치 마련이 필요함

법령 성평등 모니터링 강화 방안

-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의 입법예고된 법령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교육청 내부 입법사무처리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성별영향평가 실시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그동안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법령 컨설팅은 전담인력 1인 컨설팅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 도민 참여와 특정 영역 심층 모니터링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려워 법령 성평등 모니터링 강화 방안이 필요하며 2018년 법령 성평등 개선 동향을 분석한 결과로 세 가지 제안을 함
- 첫째, 법령 성평등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지원 예산 마련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매해 제·개정되는 법령은 100여개 정도가 되는데 상당한 분량의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충분한 시간과 전문적 지식의 투여가 필요함. 이것을 체계적으로 기획 운영할 수 있는 계획 수립과 예산 마련이 필요함
- 둘째, 민·관·학 법령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필요. 2018년 9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성평등정책관이 신설되고 성평등기획팀, 성인지정책팀, 여성친화도시팀 3팀 1정책관으로 10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도정 전체의 성평등 정책 실현가능성이 매우 고무되는 상황임. 민·관·학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매해 뉴스레터 형식의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법령 성평등 개선 동향(가칭)> 보고서를 결과물로 제출하는 프로젝트로 도민들의 참여와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 있음. 이런 결과물은 양성평등 주간, 젠더포럼, 성평등포럼, 성인지정책 발전포럼 등 제주지역 성평등 관련 행사에 전시하여 홍보 필요
- 셋째, 영역별 심층 모니터링 및 분석 필요. 입법예고된 전체 법령에 대한 성평등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영역별 심층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영역별 법령과 연관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심도 있는 성평등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밀착형 모니터링이 필요함.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법적 기반의 성평등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고 도민들의 성평등 정책 체감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